

# Q&A



민원인용 안내서



- Q** 영업허가 대상이나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 A** 상단 오른쪽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민원인용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 Q**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도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서만 영업이 가능해요.

### \*용도별 가능업종

- 1종 근린생활시설: 위탁관리업(300㎡ 미만)
-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외), 판매시설: 전 업종 가능(단, 생산업은 모든 개체 3kg 미만 등)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 업종 가능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전 업종 가능

▲ 개별 건축물과 소재지 특성에 따라 영업가능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소재지 시·군·구청의 최종확인 필요

- Q** 법정교육은 대표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대표자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어요.
- Q** 온라인이나 박람회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해요. 다만 영업자 준수사항(운송방법, 매매계약서, 양도·양수 신고, 사육설비 기준 등)을 꼭 지켜야 해요.
- Q** 농식품부에서 말하는 '가축'은 무엇인가요?
- A**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자)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종류를 키우는 경우의 동물 개체를 말해요
- Q** 가축의 경우 영업허가 신청이나 양도·양수 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네.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직접 판매할 때는 영업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요. 다만, 구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2차로 판매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해요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자체 수·출입 허가증, 지정관리 야생동물만 해당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란?

### 야생동물 관련 4개 업종 신설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

#### 분류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 ✓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위 대상 분류군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 허가 필요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여 판매	야생동물을 소유주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

※생산업의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양식업 면허 또는 육상·내수양식업 허가자는 제외

##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허가대상

#### ∴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 ∴ 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업

#### ∴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10마리 이상 위탁관리

#### ∴ 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20마리 이상 위탁관리

## 야생동물 영업허가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5년 12월 14일부터



#### 신청방법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전 준비사항

- 영업허가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증**  
→ 온라인으로 법정교육 이수 가능  
(www.wildlife-edu.kr, '25.12월부터)
- 야생동물 영업 시설기준 충족 증명서류 등

## 허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야생동물 영업 시설기준 확인하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의 13 참고



#### 야생동물 영업자·종사자 준수사항 확인하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의 14 참고

## 야생동물 수출·수입·유통 민원 처리 기준

구분	기존 법정관리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양도·양수 보관·폐사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수입·반입	허가신청	허가신청	신고	허가신청
수출·반출	허가신청	허가신청	신고	신고

신고 (허가신청) : 원칙적 금지, 공익 연구 목적 시 예외적 허용